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5-4호

Sep. 2025

보험 판례

재조달가액 특약과 명시,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카센터의 설치기계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재조달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중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재조달가액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은 "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상하고(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 전문'), 피보험자 등이 손해 발생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재조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일부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재조달가액 특약사항 중 재조달 의사를 포함한 서면 통지 요건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2.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설치기계,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실제로 수리나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고에게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른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설치기계, 집기비품 등 손해에 대한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에 의한 보상만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2가단5193221 판결)
-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 중 시가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만 인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사건 특약조항은 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피보험자의 재조달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나14854 판결)

- 그러나,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은, 이 사건 특약조항 전문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은 단순히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절차적 요건만 정한 것이 아니라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 및 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재조달가액 특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 상법 제67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의 보상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이득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목적물을 새로 구입·수리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특약조항 전문은 상법을 그대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의 명시적인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움
 - 상법 제657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였을 뿐,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과 같이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험목적물을 재조달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고 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이 단순히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음

3. 시사점

- 손해보험의 실손보상계약성, 즉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제한됨. 이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사고 당시의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계약체결시 약정된 보험금액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시가보험). 그러나 보험목적물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신품이었던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고품으로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기준의 보상만으로는 신품을 대체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복구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1991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신품가액 기준의 보상을 허용하는 신가보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재조달가액 특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됨. 이는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보험자 등이 손해 발생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재조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는 특약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임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나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상실사유나 면책사유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특약 체결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향후 약관에 이례적인 청구권 상실사유나 면책사유가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